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56호
----------	-------

제출년월일 : 2001.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지급기준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험문제출제수당을 현실화하여 양질의 시험문제 확보 및 시험의 신뢰성 회복등 시험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수당의 현실화
 - 1 문제당 3,000원 ⇒ 1 문제당 10,000원으로 함

3. 조례개정안 : 불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과 같음

5. 관계법령발췌 : 불임과 같음

6.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출제수당란중 객관식의 수당액 “3,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시험수당지급구분표

현행				개정안					
수당별	구분		수당액	비고	수당별	구분		수당액	비고
출제수당	객관식	6급이하 시험 (문제당)	3,000원		출제수당	객관식	6급이하 시험 (문제당)	10,000원	
	주관식		(생략)			주관식		(현행과 같음)	
채점수당	객관식		(생략)		채점수당	객관식		(현행과 같음)	
	주관식		(생략)			주관식		(현행과 같음)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	5급 이상 (일당)		(생략)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	5급 이상 (일당)		(현행과 같음)	
	6급 이하 (일당)		(생략)			6급 이하 (일당)		(현행과 같음)	
	종사원 (일당)		(생략)			종사원 (일당)		(현행과 같음)	
문제 편집수당			(생략)		문제 편집수당		(현행과 같음)		
문제 선정의 수당			(생략)		문제 선정의 수당		(현행과 같음)		
감시 수당			(생략)		감시 수당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발 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⑤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2001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행정자치부 >

◇ ⑩ 시험수당 ② 기준액 → Page 80

구 분	단 위	단 가	비고
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 ① 출제비의 경우 기준액을 적용함에 따라 시험관리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여 자체적용 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